

2026년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지원사업 추진계획

- ✓ 치유농업서비스 품질 향상 및 농업·농촌의 치유적 가치 기반 마련
- ✓ 우수 치유농장 육성을 통한 치유농업서비스 이용 신뢰도 확대

1 사업개요

- 기 간 : 2026. 5. ~ 12.
- 사 업 량 : 3개소
- 사 업 비 : 30,000천원(도비 30%, 시비 70%)
- 대 상 : 아래 항목 모두 충족한 농가
 - 관내 농업인 자격을 갖춘 농장 또는 영농법인체
 -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가능하며 우수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을 원하는 시설·운영기반이 있는 농장
 - ※ 당해년도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필수 신청(심사료 자부담)
 -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내공간 확보 농가
 - ※ 기준: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심사표
- 사업내용
 -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컨설팅 및 사후관리
 - 치유농업프로그램 기획, 개발, 운영 지원
 -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기자재 구입
 - 치유농업서비스 온·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등

2 대상자 선정

- 공고기간 : 2026. 5. 28.(목) ~ 6. 3.(수) [7일간]
- 접수기간 : 2026. 5. 28.(목) ~ 6. 3.(수) [7일간]
- 홍보방법 : 용인시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
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(제출서류 참조)
 - 접수 및 문의 : 농업기술센터 농촌테마과 체험농업팀 치유농업 담당자
(☎031-6193-1101)

○ 심사기준

항 목		점 수			비 고
		충족 (10점)	준비 중 (5점)	미충족 (0점)	
시설 • 장비	① 실내공간			(지원 불가)	*자가심사표 내 작성기준 참고 *증빙자료 필수 제출(미제출시 점수 없음)
	② 실외공간				
	③ 공간 분리				
	④ 남녀 화장실				
인력	⑤ 인력(2명)				
	⑥ 인력의 자격				
	⑦ 교육이수				
운영	⑧ 운영 규정 마련				
	⑨ 수입·지출 기록				
	⑩ 책임보험 가입				
총 계		○○점			

※ 동점자 발생시 ① 실내공간 > ② 실외공간 > ③ 공간 분리 > ④ 남녀 화장실 > ⑤ 인력(2명) > ⑥ 인력의 자격 > ⑦ 교육이수 항목 순으로 점수가 높은자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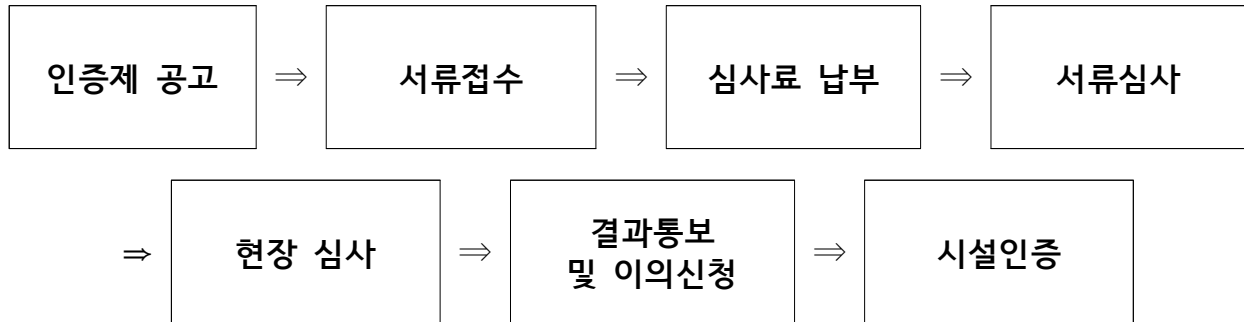
○ 제출서류

순 번	서 류	비 고
1	(필수) 신청서	서식
2	(필수) 자가 점검표	서식
3	(필수)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	1부
4	(필수) 사업자등록증	1부
5	(해당시) 자가 점검표 각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	-

3

컨설팅 운영

○ 품질인증 절차



○ 컨설팅 운영

-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고시 및 심사 실행 매뉴얼 기준 준수
- 컨설팅 흐름 : ①치유농업기반(인적·물적), 치유프로그램, 치유농업시설 검증
→ ②우수품질인증 항목별 보완 → ③우수치유농업시설 기반구축
- 품질인증 절차 및 시기에 맞춰 컨설팅 흐름 조절
- 각 농가의 특색에 맞는 컨설팅 전문가 매칭
- 기간 내 총 8회 이상 농가 현장 방문
- 치유농업분야 전문 외부 컨설턴트 연계
- 치유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재료 구입
-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취득 못한 농가의 경우 사후관리(1회 이상) 추진

4

기대효과

-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우수한 시설 선별로 지속 가능한 치유농업 확산 보급
-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을 통해 이용자 안전과 신뢰도 확보

참고 인증 심사표(우수 치유농업시설)

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[별표 1]

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심사표(제6조제1항 관련)

1.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세부 평가표

(●가부 / ○점수)

평가항목		요건 충족		점수
		가	부	
시설·장비 기준	가.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실내·외 공간 확보			
	○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 * 평가기준: 1㎡당 0.1점을 부여하되 최고 점수는 12점(면적 120㎡)으로 한다 * 확인서류 : 일반건축물대장, 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(3년이상) 등(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연면적을 인정함)			12
	○ 치유농업서비스가 가능한 ‘용도별 건축물의 종류’ - 사무소, 체험관 등 체험 관련 시설 - 동·식물원, 축사(곤충사육시설 등), 작물재배사, 종묘배양시설 등(대지에서 건축된 건물에 한하며, ‘치유농업서비스’ 제공이 가능하도록 ‘복수용도’ 등록 등의 적합함이 확인되어야 함) * ‘농지법과 건축법에 따라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이 가능’ 하며, ‘일반건축물대장’ 이 있는 경우 추가 검토를 통해 인정 가능			
	○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외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 * 18㎡당 1점을 부여하되 최고 점수는 10점(면적 180㎡)으로 한다 * 확인서류 : 토지대장, 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(3년이상)			10
	○ 실내 및 실외 공간의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적절성 정도는 아래 사항을 평가한다. * ‘치유농업서비스 대표 프로그램’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확보정도 (서비스 제공 인원 포함하여 1명당 3.3㎡내외) * 효과분석 공간, 위기대응 공간, 사무공간 등의 확보 정도 * 실내공간과 실외공간이 분리된 경우에도 인정하며, 두 공간의 거리는 반경 4km이하로 한다.(두 공간의 분리시에는 실외공간에 그늘막, 화장실 등 설치 권고)			10
	●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실외 공간과 농축산물 생산 공간 분리			
	나. 세면대, 음수대, 화장실(남녀 구분) 확보			
	● 화장실은 남녀가 구분되어 있고, 접근성·편리성·안전성 확보 여부(비상벨 설치 필요)			
	○ 세면대의 접근성·편리성·안전성 등			5
	○ 음수대의 접근성·편리성·안전성 등			5

평가항목		요건 충족		점수
		가	부	
	다. 소화기, 구급약품 및 기타 비품			
	○ 화재발생 대비 준비 정도(화재감지장치 설치, 소화기 비치, 비상대피로 표시 등)			5
	○ 구급약품은 응급상황 발생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			5
	○ 장갑 모자 등 비품은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			5
인 력 기 준	가. 치유농업시설 경영 및 운영 인력 확보			
	● 대표자 1명,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인력 1명 이상 확보			
	나. 대표자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			
	● 인력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가 * 치유농업사,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교육 이수자, 지방농촌진흥기관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이수자,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중 치유농업 관련 교과목 11학점 이상 이수한 자			
	다. 대표자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인력의 교육이수 확인			
	● 대표자와 제공 인력이 최근 1년 이내에 이용자 권리 및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 여부			
유 영 기 준	가. 운영 규정 마련			
	● 운영 규정 마련 여부			
	○ 치유농업서비스 운영에 대한 방침이 명료할 것			5
	○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 목표가 적절히 수립되어 있을 것			5
	○ 치유농업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 계획이 적절할 것			5
	○ 치유농업자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고, 치유농업자원의 종류와 규모가 적절할 것			5
	○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요건과 확보 계획 등이 적절하고 체계적일 것			5
	나.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록(1년 이내의 자료여야 함)			
	● 회계장부, 회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기록 여부			
	○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기록의 충실성 정도			10

평가항목		요건	충족	점수
		가	부	
다. 치유농업서비스 참여자의 사고발생 대비 책임보험 가입				
◎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, 총보상한도가 1억원 이상 일 것				
◎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				
라. 치유농업서비스 참여자와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계약서 작성				
◎ 계약서 작성 여부				
○ 서비스 내용, 취소·환불 규정 등 계약서 항목이 적절할 것				10
○ 계약서 관리 책임자 지정, 계약서의 체계적 관리 정도				5
마.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력 관리				
○ 서비스 제공 인력, 프로그램 명칭, 참여자 수 등 이력관리 정도				10
바. 치유농업서비스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(치유농업서비스 대표 프로그램에 한하여 평가, 동일인으로 8회기 이상, 회기당 60분(치유농업서비스 도입-전개-정리 까지의 시간) 이상, 서류 및 프로그램 연시 병행 평가))				
◎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재현성 확보를 위한 활동계획서 보유 여부				
○ 참여자의 특성과 요구에 적절한 치유 목적 설정 정도				10
○ 참여자 특성을 고려한 치유농업자원 활용, 프로그램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회기, 회기당 소요 시간 등				10
○ 치유농업 프로그램 목적 달성을 위한 회기별 활동의 적절성				10
○ 회기별 치유목적 달성을 위한 중재기술 적용의 적절성				10
○ 프로그램 효과측정 과정과 결과분석·평가 등의 적절성 (평가목적, 평가대상, 평가내용, 평가시기, 평가도구, 사용한 분석 프로그램 및 분석방법, 평가결과와 시사점)				10

평가항목		요건 충족		점수
		가	부	
	사. 치유농업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			
	● 치유농업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운영 여부			
	○ 효과평가 실시 및 서비스 운영 개선에 반영 정도			10
	아. 치유농업서비스 참여자에게 만족도 조사 실시			
	● 치유농업서비스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			
	○ 조사항목의 적정성 및 개선 사항 반영 등			10
	자.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홍보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			
	○ 온오프라인 홍보자료를 보유하고 품질은 우수한가			5
가점	◦ 「농촌진흥법」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추천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중복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. * 치유농업사 자격취득 : 1점 * 치유농업사 자격취득,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교육 또는 치유농업 시설 운영자 교육 이수 후 치유농장 또는 농촌교육농장 운영 3년 이상 경력 : 1점 * 농촌융복합산업인증,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시설 : 1점 *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운영하는 치유농업 관련 연구화농업인대학 등의 활동실적 또는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 실적 : 1점			최대 3점

2. 심사 결과에 따른 적부 기준

가. 가/부 항목 13개 중 1개 이상의 부적합(부)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.

나. 점수부여 항목 총점 192점 중 평가점수 115.2점(60%)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.(평가점수는 가점을 포함한다.)

3. 심사에 필요한 세부 제출 서류의 종류에 대한 것은 ‘실시계획’에서 정할 수 있다.